

情報化時代와 特許制度

睦 延 均
(情報資料室長)

.....〈차 례〉.....

- I. 머 리 말
- II. 特許制度의 意義
- III. 特許制度에 따르는 主要制度
- IV. 特許情報의 權利化過程
- V. 特許情報의 特殊性
- VI. 特許情報의 形態
- VII. 特許情報의 役割
- VIII. 特許情報의 調査
- IX. 特許制度의 國際化傾向
- X. 特許管理
- XI. 맺 는 말

I. 머 리 말

現代社會를 情報化時代라고 한다. 社會全般에 걸쳐 情報化樣相도 多種多樣하고, 그 變遷도 急激하여 社會活動의 根源에 있어서 情報가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어 결국은 情報産業이라고 하는 側面으로 産業的인 變革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情報化時代의 産物로 洪水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各種 情報(〈表 1〉 參照), 그리고 이들 各種 情報의 蒐集, 整理, 加工, 蓄積, 流通을 위한 컴퓨터技術의 發展과 더불어 情報化時代에 있어서 情報産業의 質的인 變革을 가져오는 社會가 되었다.

이와 같은 變革을 가져오는 社會의 徵候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展開되고 있다.

- ① 日常生活費中 情報를 얻기 위한 費用에 많은 投資가 되고 있다.
- ② .GNP가 점유하고 있는 情報産業의 比率이 높아졌다. 情報産業에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産業만이 아니고 情報處理서비스業도 包含된다.
- ③ 情報量에 있어서 發生量이 增加할 뿐만 아니라 必要로하는 蓄積量도 增加하고 있다.
- ④ 情報의 價値가 從來보다 높이 評價되고, 情報나 知的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價格이 부가되어 가고 있다.
- ⑤ 電算機化가 進전되고 있는 한편 電算機의 設置臺數가 늘어나고 있다(〈表 2〉 參照).
- ⑥ 行政機關이나 企業 등 意識的인 情報利用者뿐만 아니라 一般 個人의 生活에도 組織된 情報가 不可缺의 要素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變革을 가져온 情報化時代에 있어서 技術情報, 특히 世界各國의 特許制度를 根幹으로 하여 發生되는 特許情報(〈表 3〉 參照)가 特許制度에 의해 獨占權이 부여되고 있어서 經濟活動에 미치는 影響力은 至大하여 直接的으로 國內外市場을 擴大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 特許權에 의한 라이선스契約이나 크로스라이선스契約 등에 의해 企業의 利益을 더욱더 增大시켜 나아갈 수 있으며, 國內外의 競爭力에 있어서도 優位성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特許情報, 즉 特許權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特許制度에서 비롯되는 特許情報에 關聯한 基本概念에 關해 考察코자 한다.

〈表 1〉 科學技術情報의 生産量

		單位：萬件
情報의 種類	件 數	備 考
雜誌記事情報	200	雜誌種數 約 4萬種
特許情報	100	
技術리포트	20	會議數 3,000回
會議錄記事	20	
學位論文	20	新聞記事 單行本類
기 타	100	
計	460	

資料：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情報活動推進의 目標와 施策에 대하여」, 1978, 12.

〈表 2〉 電子計算機納品 調査에 의한 컴퓨터의 型別 實動狀況(日本)

單位：臺

區分	型別		大 型	中 型	小 型	超 小 型	計
	年 月						
設 置 數 (세 트)	臺	1977년 3月末	2,232 (108.7)	6,274 (105.4)	11,618 (124.6)	20,595 (115.3)	40,719 (115.3)
		1978년 3月末	2,399 (107.5)	6,746 (107.5)	14,160 (121.9)	24,827 (114.6)	48,132 (118.2)
		1979년 3月末	2,691 (112.2)	7,364 (109.2)	17,033 (120.3)	31,856 (120.5)	58,944 (122.5)
		1980년 3月末	2,953 (109.7)	8,153 (110.7)	20,529 (120.5)	40,473 (128.3)	72,108 (122.3)
		1981년 3月末	3,222 (109.1)	9,522 (116.8)	26,381 (128.5)	49,098 (121.3)	88,223 (122.3)
	臺 金 額 (百 萬 엔)	1977년 3月末	1,518,888 (114.0)	662,847 (105.7)	223,765 (119.0)	123,063 (115.1)	2,532,568 (112.1)
		1978년 3月末	1,683,244 (110.8)	717,340 (108.2)	267,589 (119.6)	152,563 (120.1)	2,820,736 (111.4)
		1979년 3月末	1,929,347 (114.6)	778,007 (108.4)	319,074 (119.2)	191,845 (125.7)	3,218,272 (114.1)
		1980년 3月末	2,163,454 (112.1)	838,572 (107.8)	381,783 (123.5)	240,086 (125.1)	3,623,896 (112.6)
		1981년 3月末	2,441,430 (112.8)	946,308 (112.8)	487,114 (127.6)	289,868 (120.7)	4,164,720 (114.9)
比 率	臺 數 (%)	1977년 3月末	5.5	15.4	28.5	50.6	100.0
		1978년 3月末	5.0	14.0	29.4	51.6	100.0
		1979년 3月末	4.6	12.5	28.9	54.0	100.0
		1980년 3月末	4.1	11.3	28.5	56.1	100.0
		1981년 3月末	3.7	10.8	29.9	55.6	100.0
	金 額 (%)	1977년 3月末	60.0	26.2	8.8	5.0	100.0
		1978년 3月末	59.7	25.4	9.5	5.4	100.0
		1979년 3月末	59.9	24.2	9.9	6.0	100.0
		1980년 3月末	59.7	23.1	10.5	6.6	100.0
		1981년 3月末	58.6	22.8	11.7	6.9	100.0

資料：日本 通商産業省, 「日本國 情報處理의 現狀」, 1983. 12.

註：() 內는 對前年比.

〈表 3〉 世界各國의 工業所有權中 特許의 出願 및 登錄件數(1982년)

國 名	出願件數	登錄件數	國 名	出願件數	登錄件數
韓 國	5,924	2,609	이 집 트	766	282
美 國	109,625	57,889	그 리 스	3,260	2,236
英 國	38,093	29,590	日 本	235,324	50,601
프 랑 스	22,242	23,944	네 덜 란 드	5,085	6,653
西 獨	47,825	16,306	뉴 질 란 드	3,533	1,377
東 獨	10,138	5,304	노 르 웨 이	4,426	1,849
벨 기 에	3,858	3,826	스 페 인	10,201	9,710
브 라 질	7,678	10,074	스 웨 덴	7,529	7,864
오스트레일리아	10,678	5,731	스 위 스	7,482	9,627
오스트리아	4,853	4,061	터 키	511	346
캐 나 다	25,293	23,147	포르투갈	1,826	1,213
덴 마 크	5,801	1,530			

資料：「特許廳年報」，特許廳，1984.

Ⅱ. 特許制度의 意義

特許制度는 一名 工業所有權制度라고도 하며, 이 制度는 發明을 獎勵, 保護, 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歩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國家가 制定한 制度를 말한다.

이 制度는 國別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四權으로 區分된다.

- ① 特許權
- ② 實用新案權
- ③ 意匠權
- ④ 商標權

이들 權利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成立條件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① 發明의 有用性
- ② 發明의 新規性
- ③ 發明의 進歩性

Ⅲ. 特許制度에 따르는 主要制度

다음에 記述되는 制度들은 特許制度上의 主要骨子が 되는 制度들인바 各國은 이들 制度를 中心으로 그들 나름대로 採擇하여 採用하고 있다.

따라서 國別로 보면 制度上에 差異가 있다.

1. 先願主義와 先發明主義

1) 先願主義

이 制度는 發明한 內容을 가장 먼저 出願節次를 끝낸 出願人에게 特許出願에 관한 權利를 認定하는 制度로서 先願主義가 採用되는 國家에서는 發明이 發生되는 즉시 出願하여 두어야 할 必要性이 있다.

특히 新製品開發에 있어서 同業 各社가 그 商品開發에 必死的으로 競爭되어 있을 경우 하루의 出願遲延이 後日에 莫大한 損害를 가져오게 된다.

이 制度는 韓國, 日本, 英國, 西獨, 自由中國 등의 國家에서 採用되고 있다.

2) 先發明主義

이 制度에서는 特許의 先出願에는 關係없이 가장 먼저 發明한 者에게 特許出願에 관한 權利를 認定하는 制度이다.

先發明主義를 擇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發明考案이 생긴 以後에도 이에 대한 追加試驗開發을 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어서 實施價値가 있는 것 만을 重點적으로 出願할 수 있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볼 때 先發明主義國의 特許가 先願主義國의 特許보다 技術情報로서의 價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制度는 美國, 캐나다 등의 國家에서 採用하고 있다.

2.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特許를 出願하게 되면 먼저 그 나라에서 定하여진 特許制度上의 “出願樣式”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를 審査하는 方式審査를 받는다. 그다음 出願된 內容이 “特許를 成立시킬 수 있는 條件”과 일치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審査하는 實體

審査를 받는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方式審査만으로 特許權을 부여하는 制度를 「無審査主義」라 하고 方式審査에서 實體審査까지를 거쳐서 特許權을 부여하는 制度를 「審査主義」라 한다.

벨기에는 無審査主義를 擇하고 있으며 韓國, 日本, 美國을 비롯하여 그밖의 大部分의 國家들이 審査主義를 擇하고 있다.

3. 早期公開制度와 審査請求制度

科學技術의 急激한 進歩와 發展에 따라 科學技術分野의 論文 및 이에 關聯된 特許出願이 急増하여 國際적으로 特許制度上的 大變革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出願特許에 대해 短時日內에 審査處理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處理의 遲延으로 말미암아 技術을 公開하여 技術進歩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産業界에서는 特許公告의 遲延으로 말미암아 企業化의 判斷을 내리는 데에도 큰 支障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問題點들에 대해 諸般技術情報의 早期提供을 目的으로 採擇된 것이 特許出願의 早期公開制度와 審査請求制度인 것이다.

이 制度는 特許廳에 特許를 出願하게 되면 方式審査를 거쳐 一定期間(18個月)이 經過하면 이를 早期公開公報에 의해 公開를 한다. 이와 같은 公開를 소위 早期公開制度라 한다.

그리고 出願人이나 第三者는 公開된 內容을 審査하여 달라고 特許廳으로 審査請求書를 提出한다.

審査請求書의 提出은 出願과 同時에 할 수도 있으며, 公開된 後에도 特定期間內(國家에 따라서 多少의 差異가 있음. 韓國인 경우 特許는 出願日부터 5年以內, 實用新案은 出願日로부터 3年以內에 審査請求書를 提出하여야 한다)에 提出하면 된다.

特許廳은 審査請求가 있는 것에 限해 實體審査를 하여 特許許可의 興否를 決定하게 되며, 審査結果 特別한 事由가 없는 出願에 대하여는 公告公報에 收錄하여 公開를 하게 된다.

따라서 所定期間內에 審査請求가 없는 것은 出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와같은 制度를 審査請求制度라 한다.

上記한 早期公開制度와 審査請求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國家는 韓國, 日本, 英國, 프랑스, 西獨 등이다.

이 制度는 採擇하고 있는 國家에 따라서 早期公開方法, 審査請求日程 등이 制度的인 面에서 相異한 點이 있으나 基本취지는 大同小異하다.

4. 物質特許와 製法特許

一般的으로 化學方法에 의해 製造되는 物質의 發明에 대해 주어지는 特許를 物質特許라 하며, 이 物質의 製造方法에 관해 주어지는 特許를 製法特許라 한다.

上記한 物質特許 및 製法特許의 兩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는 美國, 日本, 英國, 西獨, 프랑스 등이다.

韓國은 製法特許만을 認定하고 있으며 가까운 將來에 物質特許제도도 導入될 豫定이다.

5. 特許權의 存續期間

國家로부터 부여된 特許權의 存續期間이 設定되어 있으며, 이 存續期間은 國家마다 다르다(〈表 4〉 參照).

〈表 4〉 主要國의 特許權 存續期間

國 別	權 利 의 區 分	存 續 期 間	備 考
韓 國	特 許	12 年	公告日부터
	實 用 新 案	10	公告 또는 登錄日
日 本	特 許	15	公告日
	實 用 新 案	10	公告日
自 由 中 國	特 許	15	出願日
	實 用 新 案	10	出願日
西 獨	特 許	20	出願日
	實 用 新 案	3	出願日
프 랑 스	特 許	20	出願日
	實 用 新 案	6	出願日
美 國	特 許	17	特許日
英 國	特 許	20	特許日
벨 기 에	特 許	20	特許日
이 탈 리 아	特 許	20	特許日

IV. 特許情報의 權利化過程

發明을 出願하여 (圖 1)과 같이 여러 단계의 審査過程을 거쳐서 特許權을 받게 된다.

1. I 型

審査主義國으로서 發明을 出願하여 方式審査로부터 異議申請에 이르는 全過程을 거쳐 特許權을 부여하는 國家 :

韓國, 日本, 英國, 西獨, 프랑스

2. II 型

審査主義國으로서 發明을 出願하여 方式審査와 實體審査만의 過程을 거쳐서 特許權을 부여하는 國家 :

美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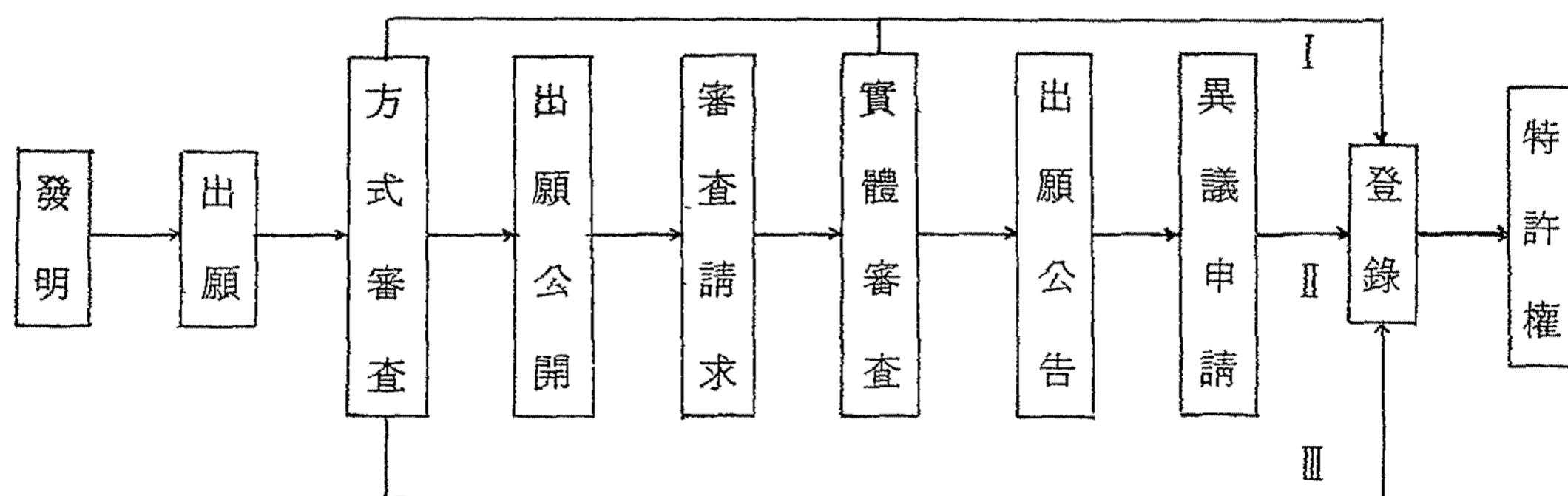
3. III 型

無審査主義國으로서 發明을 出願하여 方式審査만의 過程을 거쳐서 特許權을 부여하는 國家 :

벨기에

< 圖 1 >

特許情報의 權利化過程



V. 特許情報의 特殊性

特許情報は 다음과 같은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一般科學技術情報과 區別되는 點이기도 하다.

1. 特許制度를 바탕으로 한 情報

特許정보는 特許制度에 의해 發明者의 權利가 保護되며, 그 活用을 通해 發明의 獎勵와 産業發展을 促進시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特許정보는 技術情報임과 同時에 權利情報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의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特許制度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制度에 의해 權利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므로 企業에 있어서는 自社가 開發한 新技術을 特許權으로 保護받아 獨占的으로 市場에 進出할 수 있는 것이다.

2. 最新技術情報임과 同時에 實體性있는 情報

特許制度는 發明者의 權利를 保護함을 전제로 出願한 內容에 대해 新規性, 進歩性, 有用性 등을 엄격히 審査하여 特許權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特許정보는 最新의 新規性있는 技術情報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有用하게 活用할 수 있어야만 特許權을 부여하기 때문에 實體性있는 情報라 말하고 있다.

3. 情報의 形態가 定型化되어 있다

明細書에 記載하는 樣式이 一定한 形態를 갖추고 있으며, 技術內容도 第三者에 의해 쉽게 實施할 수 있을 程度로 상세하게 記述되어야 하는 點과 權利關係가 明確하게 記載되어 있는 點 등 情報의 形態가 定型化되어 있다.

4. 技術情報로서의 壽命이 길다

特許情報은 權利의 存續期間이 國家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大部分이 10년 以上으로 되어 있다는 理由以外에도 第7回 ICIREPAT(審査主義 特許廳間의 情報檢索에 관한 國際協力委員會) 總會에서 發明의 新規性調査機關으로서 有名한 舊 IIB(國際特許協會, 네덜란드)가 調査報告한 先行技術活用度の 年代別 分布狀況을 보면

5년 미만 41%, 5~10년 18%, 10~15년 10%, 15~20년 7%, 20~25년 4%, 25년 以上 20%로서 그 活用도가 最近의 情報뿐만이 아니라, 年代가 오래 된 相當量의 情報가 活用되고 있는 것을 볼 때 特許情報은 壽命이 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5. 技術의 歷史的 흐름과 技術豫測을 考察할 수 있는 情報

特許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各 國家들은 發明한 全內容을 明細書에 記載하여 公告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特定技術에 관한 特許情報을 遡及하여 調査, 分析함으로써 技術의 歷史的인 흐름을 考察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特許情報을 時系列的으로 解析하여 分析하면 世界 및 特定企業들의 研究開發動向이나 技術動向을 豫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얻은 情報들은 곧 同社의 研究開發의 目標設定이나 市場動向豫測의 修正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6. 發生量을 正確히 파악할 수 있는 情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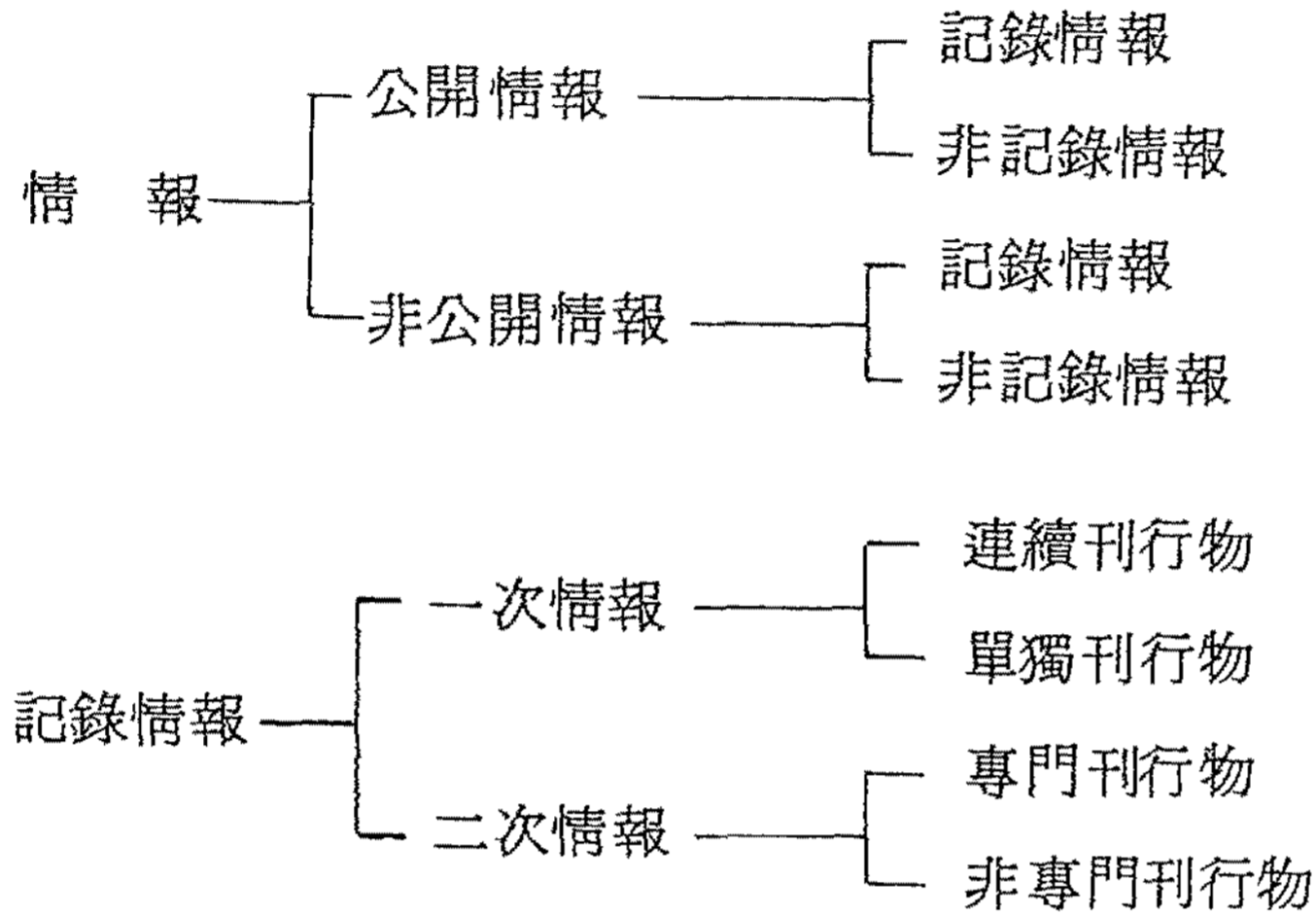
特許情報 以外의 一般技術情報은 그 年間發生量을 正確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特許情報인 경우는 每年 各國特許廳이 發行하는 年報에 그 發生量이 正確하게 發表되고 있다. 또한 이들을 集約한 것이 WIPO(世界 知的的所有權機構)의 機關誌인 *Industrial Property*에 發表되고 있어서 情報量을 正確히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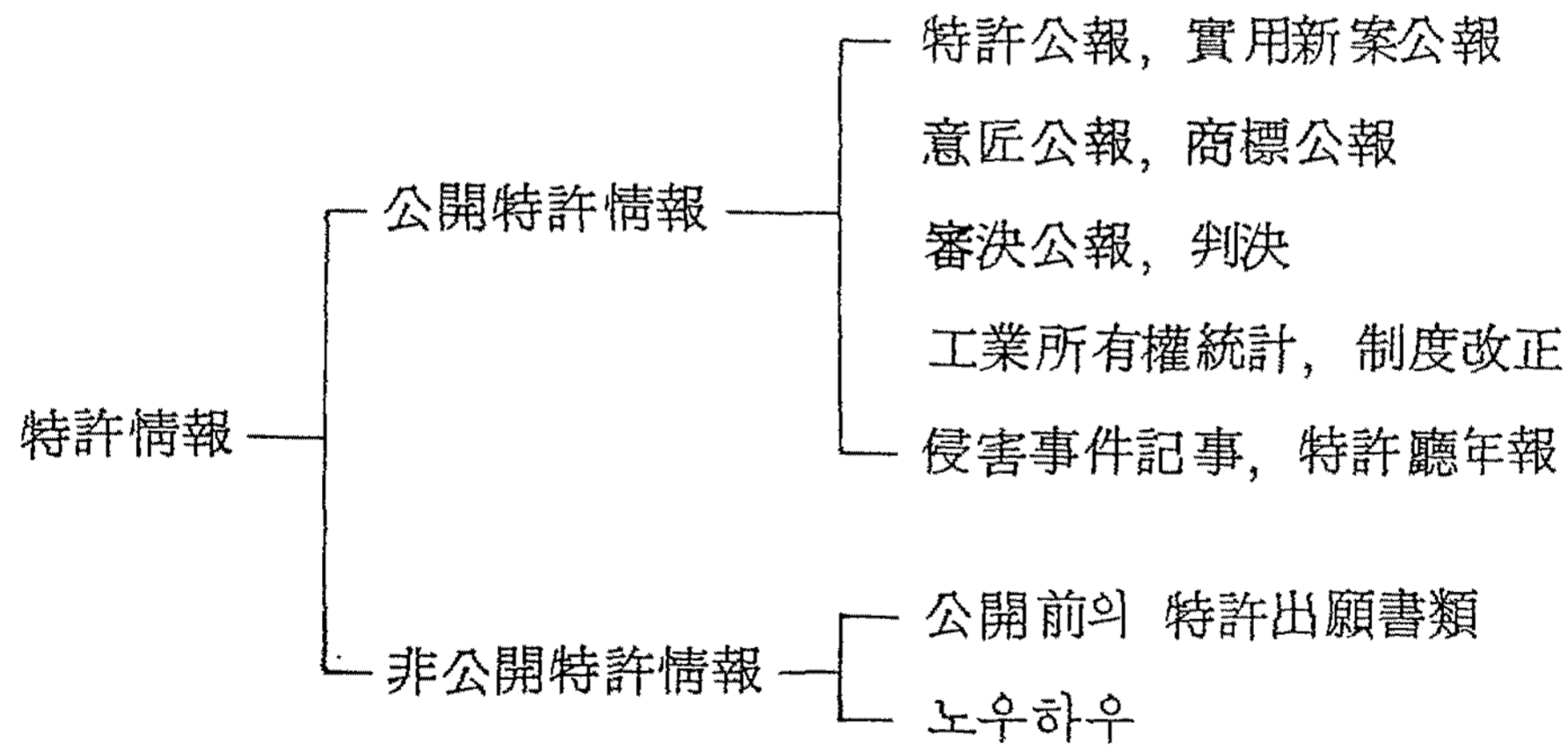
이와 같이 情報의 量을 正確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情報管理上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가지게 된다.

Ⅵ. 特許情報의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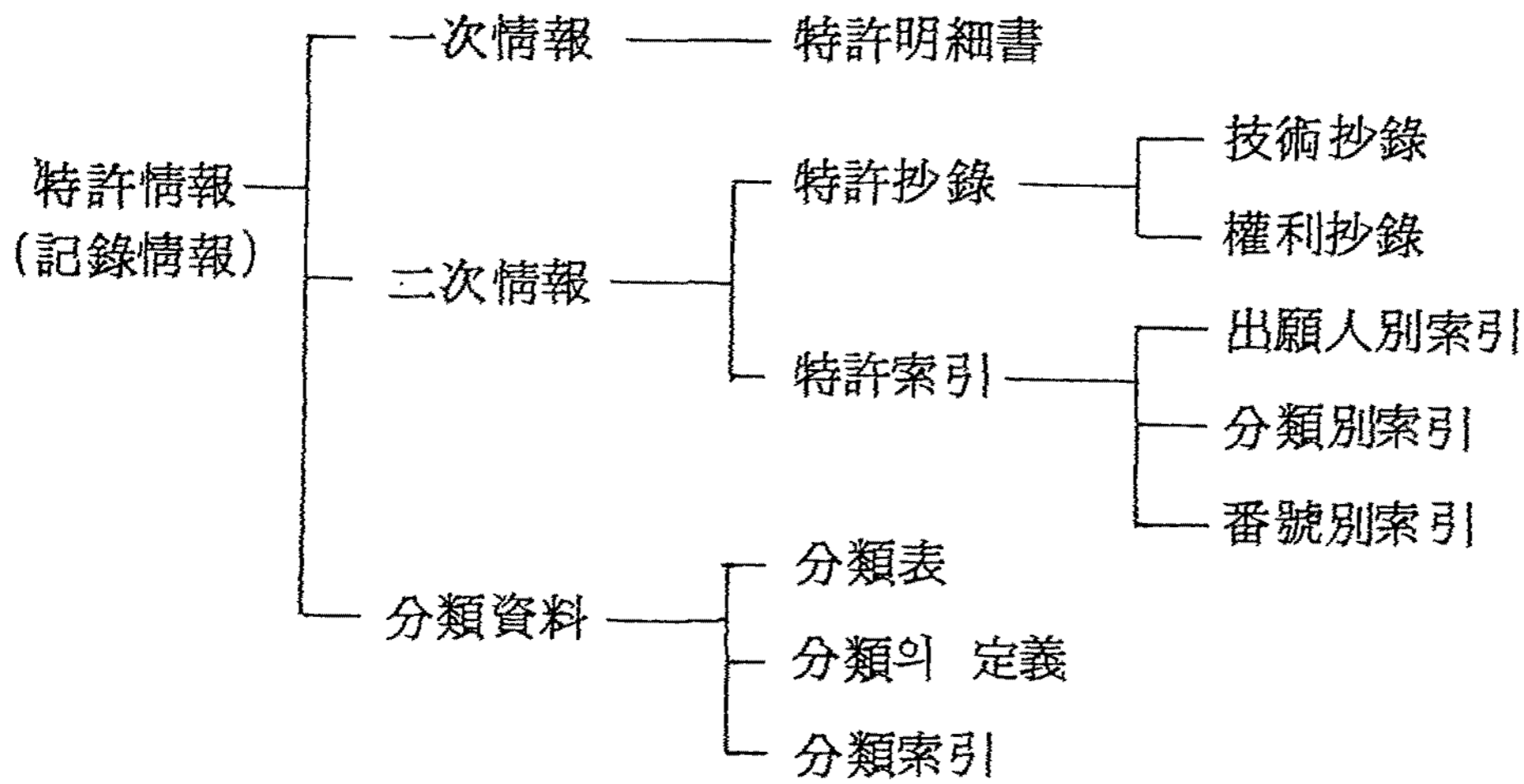
一般的으로 情報의 形態를 보게되면 다음과 같이 公開情報와 非公開情報로 區分할 수 있으며, 또한 情報의 表現形態에 따라 記錄情報와 非記錄情報로 區分하게 된다.



特許情報도 역시 넓은 意味로 볼 때 다음과 같이 公開情報와 非公開情報로 區分할 수 있다.



그리고 記錄化된 情報로는 다음과 같은 形態로 大別할 수 있다.



VII. 特許情報의 役割

企業의 經濟活動에 있어서 技術面에 부과된 役割은 대단히 크다. 이 役割에 있어서 깊은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 特許이다.

(圖 2)는 企業의 技術開發過程과 그 成果가 經濟活動에 기여하는 役割, 그리고 이 過程에 있어서 特許制度가 기여하는 役割을 圖示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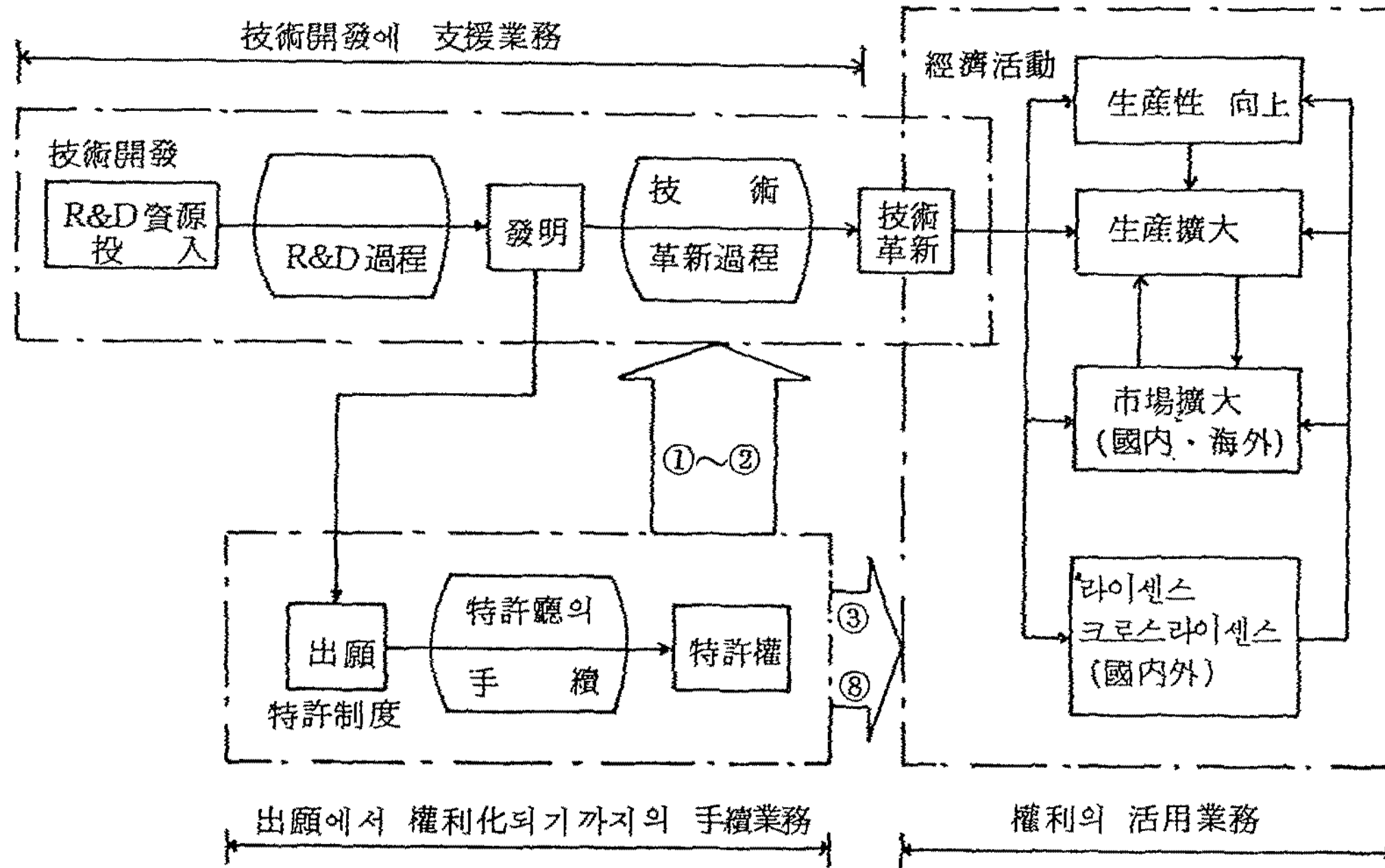
技術開發은 研究開發投資費나 人材의 投入으로부터 始作하여 그 結果 發生한 發明은 特許로 出願되어 特許權을 얻게 되며, 實際生産에 適用되어 技術革新을 가져오게 된다.

技術革新은 企業의 經濟活動에 있어서 生産性を 向上시키고 生産을 擴大하여 直接的으로 國內外市場을 擴張하여 나아가게 된다.

또한 技術開發에 의해 發生된 發明은 라이선스契約이나, 크로스라이선스契約에 의해 直接的으로 企業의 利益을 도모하게 된다.

特許制度가 企業의 技術開發이나 經濟活動에 寄與할 役割은 다음과 같은 事例 ((圖 2)에서 ①~⑧ 參照)들을 들 수 있다.

〈圖 2〉 技術開發, 經濟活動 및 特許制度의 關係와 企業에서의 特許管理



1. 技術開發에의 寄與

特許는 企業의 研究開發이나 技術革新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다, 그 理由로
는,

- ① 開發投資리스크의 輕減을 들 수 있다. 즉 巨額의 投資負擔이 必要한 技術開發에서는 위험부담이 뒤따르나 開發成果에 대한 發明의 獨占權이 보장되므로 研究開發投資의 回收가 어느 程度 豫測可能해지며, 投資를 增大시킬 수 있는 效果가 있는 點
- ② 開發成果가 特許權으로써 保護되므로 收益을 올림으로써 이를 다시 새로운 技術開發에 再投資하여 使用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企業의 技術開發活動을 繼續적으로 遂行할 수 있는 點
- ③ 特許權을 얻으려고 하는 企業間의 競爭으로 技術進歩에 대한 刺戟과 開發競爭의 速度도 빨라짐과 同時에 한가지의 發明特許에 대한 迂廻發明, 改良發明이라고하는 周邊을 開發한 發明 등으로 인해 이를 통한 技術進歩가 이룩되는 點, 또한 特許는 競爭者間의 模倣이나 侵害를 防止하기 위해 技術開發에 대한 投資意欲을 維持하게 되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2. 技術開發의 매니지먼트

企業이 制限된 資源을 利用하여 技術開發을 推進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效率的으로 開發을 遂行하기 위한 매니지먼트가 關鍵이 된다. 特許는 이와 같은 매니지먼트의 有力한 手段의 하나로서 利用된다. 例컨대 競爭者의 特許權取得狀況을 調査한다던가, 最新의 技術動向을 考察하기 위해 特許出願狀況을 파악하는 등은 研究開發의 方向決定을 위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1.

또한 先行特許出願을 調査함으로써 研究開發의 重複投資防止를 도모할 수 있다.

3. 市場의 優位性確保

特許權의 本質은 一定期間의 獨占排他權이라고 하는 權利가 있어서 이와 같은 技術의 獨占到 의해 企業은 市場에 있어서 優位性을 갖게 되며, 自社의 市場을 擴大하여 나아갈 수 있다.

例컨대 技術의 獨占到으로 一定期間 市場을 獨占하게 된다면 獨占的 利益은 勿論이려니와 競爭者의 模倣을 一定期間 排除함으로써 技術隔差를 維持할 수 있다.

특히 基本發明에 덧붙여서 차례차례로 改良發明을 維持하여 特許權을 얻어 나아감으로써 이를 中心으로 한 獨占力 및 侵害障壁을 長期間 強力히 維持하여 나아갈 수 있다.

4. 라이선싱에 의한 收入

特許權은 技術을 市場에서 賣買할 수 있는 形態의 「商品化機能」을 갖고 있다. 이 機能을 利用하여 企業은 特許權을 有償으로 他社에 實施許諾을 함으로써 當初의 投資額을 回收하여 利益을 圖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實施料의 收入은 開發技術이 가져오는 부가적인 利益(自社에서 實施하여 이미 充分한 利益을 發生시킨 경우가 많다)이 되는 한편, 有利한 點이라 할 수 있다.

5.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한 技術導入

企業은 크로스라이센스로써 技術을 交換함으로써 技術導入을 圖謀할 수 있다. 大規模의 技術開發 등에서는 그 모두를 自社만의 自力에 의한다는 것 만이 반드시 效率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重要的 部分만을 自社에서 開發하고 그 밖에 必要的 技術 등에 대하여는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해 技術導入을 圖謀함으로써 開發期間을 短縮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早期에 商品化할 수 있는 有利的 點도 있다.

6. 特許와 貿易

企業이 開發技術을 基本으로 한 製品을 輸出하고자 할 때에는 輸出코자하는 相對國에서 먼저 特許權을 獲得하여 놓음으로써 開發技術을 保護받을 수 있다.

특히 開發技術이 劃期的인 것일 경우는 國外에서 競爭者가 나오지 못하도록 特許로써 排除하여 自社の 輸出에 關係되는 技術을 保護하는 것이 重要的 事이다.

7. 外國進出에 利用

企業이 外國으로 進出하고자 할 때 特許는 큰 힘을 發揮하게 된다. 즉 進出코자하는 相對國에서 特許를 獲得함으로써 그 나라의 市場을 확보하는 데에 重要的 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企業進出時의 리스크를 輕減시켜 준다.

또한 그 企業自身の 進出뿐만이 아니라 合併이나 資本進出, 技術提携, 共同開發 등의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重要的 特許를 몇 件 所有하고 있는가가 그 企業에 대한 評價의 基礎로하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面으로 볼 때 特許는 企業의 尺度가 되는 重要的 武器라 하겠다.

8. 기타의 效用

上記한 效用以外에 商品의 差別化나 企業이미지의 問題가 있다.

例컨대 商品의 技術的 特徵이 特許權으로 確立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過去에는 없었던 새로운 特徵을 가진 商品임을 客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證據가 되며, 다른 商品과 識別하는 하나의 要件과 그리고 그 企業을 認識하게 되는 點이다.

VIII. 特許情報의 調査

1. 調査의 目的

企業에 있어서 特許調査가 必要한 一般的인 目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研究開發, 新製品開發을 위한 調査

- 아이디어의 發掘로부터 研究開發, 新製品開發테마의 決定
- 先行技術探知에 의한 重複研究 防止
- 技術動向分析 및 技術豫測
- 研究開發途中 自社技術의 保護 및 他人의 特許監視
- 開發에 부수적으로 必要한 技術情報의 探知

② 特許出願을 위한 調査

- 先願同一發明의 有無
- 新規性, 進歩性 探知

③ 異議申請, 無效審判請求를 위한 調査

- 對象出願의 新規性, 進歩性 등의 否定
- 先願同一發明의 索出

④ 生産, 販賣를 위한 調査

- 抵觸特許의 有無
- 抵觸特許가 있을 時의 對策

⑤ 技術導入, 交換, 輸出을 위한 調査

- 相對方이 所有한 技術의 把握, 評價
- 第三者의 特許權에 의한 制約의 有無

2. 特許調査의 種類

特許調査는 先行技術이나 特許權의 存否 등을 探知하기 위해 一般科學技術情報나 特許情報 등을 調査하여 必要한 目的에 活用함을 意味한다.

本稿에서는 特許情報가 지니고 있는 特殊性을 基本으로 한 特許調査에 關係記述하고 一般 科學技術情報의 調査方法에 關係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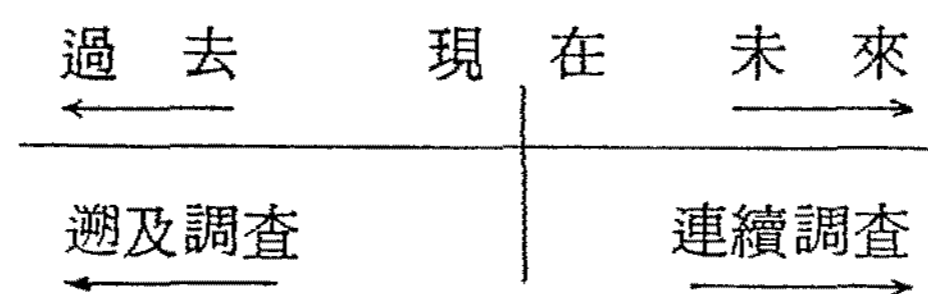
特許調査에서는 特許情報特有的의 性格, 즉 權利 및 技術에 대한 兩面關係가 있기 때문에 專門的인 技術知識以外에도 各國의 特許法制, 分類體系 등에 대한 熟知가 必要하다.

特許調査方法, 즉 權利 및 技術 등에 관한 從屬關係를 探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法에 의해 遂行한다.

特許 [權利] 調査 { 不特定特許調査(主題調査)
[技術] 特定特許調査(對應特許, 出願人調査)

不特定特許調査는 어떤 主題에 관한 技術, 例컨대 「自動車의 油類節約裝置」에 대해 調査하고자 할 때 모든 特許情報를 對象으로하여 調査하는 方法이며 特定特許調査란 對應特許의 調査, 즉 어느 나라에 存在하는 特定の 特許와 同一內容의 特許라든가 特定の 發明者 혹은 出願人에 대한 特定特許의 有無 등을 調査하는 方法이다.

그리고 以上에서 記述한 特許調査에 있어서 特許情報를 必要로하는 要求者의 條件에 따라 다음과 같은 調査를 遂行하게 된다.



遡及調査(RS = Retrospective Search)는 알고자 하는 內容에 關係되는 過去分の 特許情報를 調査하는 것이고, 連續調査(一名 現狀追跡調査, SDI =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는 現時點으로부터 發生되는 特許情報를 추적하여 調査하는 것으로서 發生되는 特許에 대한 監視調査이기도 하다.

一般的으로 研究開發 등을 위해서 特許調査를 實施할 경우, 먼저 遡及調査로 過去分の 모든 特許情報를 調査하고 그 後 發生되는 特許情報에 관해서는 連續調査로써 繼續하면 理想的이라 하겠다.

IX. 特許制度의 國際化傾向

世界各國에서 特許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가 120餘個國으로서 이들 各國家마다 制度上에서 오는 差異로 말미암아 審査處理의 迅速化, 技術의 相互交流, 權利의 國際間 相互保護 등이 必要하게 됨으로써 一般的으로 特許制度의 統一性を 維持하기 위한 國際化傾向에 偏重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미 遂行되고 있는, ①萬國工業所有權保護條約(一名 파리條約, Convention de Par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dustrille), ②歐洲特許條約(European Patent Convention), ③特許協力條約(Patent Cooperation Treaty), ④國際特許分類(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등의 協定 내지는 條約機構以外에도 特許制度에 관한 國際間的 協力推進을 擔當하고 있는 組織인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비롯하여 特許制度上의 發展과 共通的인 活性化를 도모코자하는 制度들이 있다.

X. 特許管理

特許管理는 特許出願, 審査, 審判, 製品開發, 生産, 販賣, 輸出 등에 關聯한 業務遂行을 위해 特許制度의 熟知 및 特許情報의 蒐集으로부터 始作하여 分類, 整理, 蓄積 및 抄錄, 索引으로의 加工, 調査檢索 등 一連의 過程을 가장 有效하게 機能化시키기 위해 遂行되는 業務이다.

따라서 特許管理는 企業에 있어서 經營戰略의 한 部門으로 참여하게 되며, 各企業들이 企業나름대로의 經營方針이 있듯이 企業別로도 여러 形態의 特許管理가 遂行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大部分의 企業들이 共通的으로 遂行하고 있는 特許管理業務의 一例가 <圖 2>의, “技術開發의 支援業務”, “出願에서 權利化까지의 手續業務”, “權利의 活用業務”에 관한 部分에 해당될 것이며, 이를 위한 情報의 蒐集業務가 된다.

XI. 맺는 말

情報化時代に 있어서 特許制度에서 비롯되는 特許情報에 대해 概略적으로 考察하였다.

즉 技術開發, 研究開發 등의 過程에서 發生되는 發明에 대한 獨占使用權이 特許權인 바 資本力 등의 미약으로 市場進出競爭이 어려운 中小企業에 있어서도 開發活動을 通하여 이루어진 發明을 利用하여 大企業과 充分한 對等競爭을 할 수 있는 有利한 點을 갖게 될 것이다.

企業은 利潤을 追求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浪費的인 投資는 避한다. 이를 위해 研究開發에 投資를 하고 開發結果 發生한 發明은 特許權을 獲得, 廣範한 特許網을 펴고 企業化를 위한 資金의 投入, 具體化된 商品으로서 市場에 獨占進出을 한다.

여기서 特許權에 의해 保護된 商品만이 높은 利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獨占權이 부여되지 않은 競爭商品의 價値와는 比較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發生한 利潤은 모든 研究와 設備에 投資된 費用을 回收하게 될 것이며, 다음의 開發을 위해 投資될 것이다.

이와같이 特許는 經濟와 技術의 中개역, 즉 接着劑的인 役割을 한다.

技術은 그 自體가 經濟에 대하여 강한 影響力을 미치고 있으나 特許制度는 그 關係를 다시 다져주는 강한 機能을 갖고 있다.

따라서 國家産業發展을 圖謀하고 國際競爭力에 對處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特許制度의 깊은 理解와 活用이 앞서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野田白告一, 「企業戰略と特許」, 東京, 野田經濟社, 1971.
2. 三宅清司, “クロスライセンスとその必要性,” 「發明」, vol.73, no.6, 1976, pp.10-16.
3. 朝日奈宗太, 「外國特許と知識」, 東京, 通商産業調査會, 1979.
4. 通商産業省編, 「我が國情報處理の現狀」, 東京, 大藏省印刷局, 1983.
5. 小林昭寬外, “特許管理の現狀と特許情報,” 「情報管理」, vol.28, no.2, 1985, pp.150-167.
6. 豊原邦雄外, “特許情報の利用(Ⅱ),” 「情報管理」, vol.28, no.4, 1985, pp.339-363.
7. U.S. Dept. of Commerce, *Patent & Inventions: An Information Aid for Inventors*, 1977.
8. 特許廳編, 「特許廳年報」, 서울, 特許廳, 1984.